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 2016.09.07. 규정 제36호
(일부개정) 2017.09.05. 규정 제51호
(일부개정) 2018.11.22. 규정 제66호
(일부개정) 2024.08.20. 규정 제1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김해시복지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재단 일반직(당해 연도 기본급 기준 최저임금의 150% 이하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 전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8.11.2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9.05.>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금피크제 대상자”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도달한 직원을 말한다.
3.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이 임금지급을 산정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이란 임금 피크제 적용 직전월의 “기본급”을 말하며 정기 임금인상율은 반영한다.
4. “기본급”이라 함은 보수규정상의 본봉(연봉제는 기본연봉의 기본급)을 말한다.
5. “최저임금”이란 함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말한다.

제4조(적용기간 및 임금 감액률) ①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정년퇴직 전 3년으로 하며, 연차별 임금 감액률은 1%로 한다.<개정 2017.09.05., 2018.11.22., 2024.08.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관련 정책 및 지침의 변경, 청년고용 목표 수정 등의 사유발생시 감액율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감액율이 증가할 경우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의2(적용시기) 정년퇴직일이 6월 30일인 직원은 퇴직일 3년 전 7월 1일부터, 정년 퇴직일이 12월 31일 직원은 퇴직일 3년 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09.05]

제5조(예산관리) 임금피크제 절감액 재원으로 신규직원의 보수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원이 충당되지 못할 경우 총액인건비로 충당한다.

제6조(기본급 동결) <삭제> <개정 2018.11.22.>

제7조(별도정원) ①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한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정원으로 관리한다. 다만, 적용 대상자의 요청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에 따라 별도직군 및 직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받는 직원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다.

제9조(근로조건 등)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근무시간 및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기타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취업규정」, 「인사관리규정」 등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의 지침 또는 재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규정 제36호 2016.09.07.)

이 규정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1호 2017.09.05.)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66호 2018.11.2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 기본급 감액율은 2019. 01. 01.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59호 2024.08.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는 2024. 8. 1.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